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2년 3월 7일

나.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다. 회부일자 : 2012년 3월 9일

라. 상정일자 : 2012년 3월 20일

제16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강 재 용

나. 제안이유

-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허가 받으려는 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하는 「소음·진동관리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9770호, 2009. 6. 9. 일부개정, 2010. 7. 1. 시행)됨에 따른 수수료 요율표를 정비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에 따른 제증명 수수료 항목 신설
 -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 1건 10,000원
 -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 1건 5,000원

라. 참고사항

-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같은법 제53조
- 「지방자치법」 제137조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이 성 수

○ 본 개정 조례안은

-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신고 및 허가 수수료 업무가 2010. 7. 1. 시행됨에 따라 도에서 시로 이관되면서 수수료 항목을 신설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임.

○ 주요 내용은

-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에 따른 수수료 항목(별표1) 중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1건 10,000원,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1건 5,000원을 신설하는 것임.

○ 검토결과

- 「소음·진동관리법」 제53조 규정에 따라 2010. 7. 1.부로 배출시설 설치의 신고 및 허가 시 시군 조례에 의해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